

조선총독부 시가지계획 관련 공문서의 분류와 평가*

이 송 순**

1. 머리말
2. 조선총독부의 「조선시가지계획령」 제정과 운용
3. 시가지계획 관련 공문서의 분류 및 평가
 - 1) 총독부 공문서의 기록 평가와 의의
 - 2) 시가지계획 관련 공문서의 분류 및 평가
4. 맺음말

[국문초록]

현존 총독부 공문서는 이미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영구보존문서로 보존되고 있다. 그러나 현존 문서의 실태는 부분적이고 불균등하여 기록(archives)으로서의 가치평가와 활용에 어려운 점이 많다.

본고에서 살펴본 시가지계획 관련 공문서 역시 이를 통해 일제 시기 진행된 시가지계획의 모든 상을 도큐멘테이션하는 데는 상

* 본 논문은 2004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이 지원한 기초학문육성 인문사회분야 연구과제 (번호 : KRF-2004-073-AS2006)에 의해 지원되었음.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조사사무관

당한 한계를 갖는다. 이에 이러한 불균형 잔존 행정기록에 대해서는 당대의 정책·제도 변화에 대한 컨텍스트를 파악하고, 이를 수행한 조직의 핵심기능을 종합하여 거시 평가의 틀을 만들어, 여기에 현존 문서를 배치하는 도큐멘테이션 과정, 이 과정에서 가치가 높은 기능과 관련된 기록이 소수라는 점, 즉 기록의 재현성이 불완전한 것을 보충하기 위한 다른 역사적 자료의 적극적 이용과 적극적인 기록수집 방안을 함께 강구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일제시기 도시계획 관련 공문서 중에서도 시가지계획 관련 문서라는 하나의 문서군(series)에 대한 기록 평가를 시도했다. 따라서 이를 통해 총독부 공문서 전반에 대한 평가 방법을 도출하기는 한계가 있으나, 시가지계획이라는 총독부 식민정책의 집행과정에서 생산된 문서의 맥락을 이해하여 기록의 가치를 평가함으로써 문서 활용에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총독부 공문서와 같이 이미 영구보존기록으로 결정되어 보존되고 있는 역사기록에 대한 평가는 처분을 위한 평가로서의 기능은 갖지 못한다. 이에 역사기록에 대한 평가는 향후 기록의 접근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DB화나 정보콘텐츠화와 연계하는 방안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기록평가, 분류, 조선총독부 공문서, 도시계획, 조선시가지계획령, 시가지계획위원회

1. 머리말

근대 관료제를 바탕으로 한 근대적 국가기구가 확립되면서 각 공공기관에서 생산하는 기록의 양은 방대해졌다. 사회가 점점 다양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기관이 증설되고 역할이 확대됨으로써 이제 공공기록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 이에 과거의 남겨진 기록을 해석하고 연구하는 역사학적 과제만이 아닌 현재 생산되고 앞으로 계속 생산될 많은 기록을 어떻게 정리·보존할 것인가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기록학(archival science)이 태동하여 학문적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기록관리의 궁극적 목표는 현재 생산되는 수많은 기록을 어떤 기준하에 분류·처분하여 당대의 사회구조와 거버넌스, 아젠더를 제대로 남겨놓을 것인가의 문제일 것이다. 이에 따라 기록의 선별·평가론에 대한 연구는 기록학에서 가장 핵심적 주제라 할 수 있다. 기록물에 대한 평가론은 서구 아키비스트들의 활발한 연구와 논의를 통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고,¹⁾ 한국에서도 평가론의 적용과 전자기록이라는 새로운 기록 환경에서의 평가문제까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²⁾

기록학에서의 평가는 일반적으로 지속적 가치가 있는 중요기록물을 선별하는 행위이다. 이것은 기록물의 과잉생산이라는 환경 즉, 기록물 생산량의 증가와 그에 따른 정보의 증가에 대처하여 아키비스트가 수

- 1) 기록평가론에 대한 연구 동향 소개는 김익한, 「기록물 관리체제론 및 평가분류의 새로운 흐름」 『기록보존』 제 11호, 1998 ; 이상민, 「영구보존문서의 선별과 가치평가」 『기록보존』 제14호, 2001. 이와 함께 기록평가론(archival appraisal)에 대한 외국의 연구 성과가 번역 소개되었다. F. Gerald Ham 저, 강경무·김상민 역, 『아카이브와 매뉴스크립트의 선별과 평가』, 진리탐구, 2002 ; 오항녕 옮김, 『기록학의 평가론』, 진리탐구, 2005.
- 2) 이승억, 「한국 공공분야 ‘기록보유’ 체제 전망 -‘기록물 분류기준표’의 제도적 의의와 특성」 『기록학연구』 4, 2001 ; 조영삼, 「‘구기록물’ 재편철 방안의 모색」 『기록학연구』 5, 2002; 김명훈, 「공공기록물의 평가체제에 대한 이론적 검토-선별방식 및 가치범주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6, 2002 ; 이승억, 「전자 환경에서의 기록관리 개념에 관한 재검토」 『기록학연구』 6, 2002 ; 설문원, 「행정기관의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요소 분석」 『한국비블리아』 15-1, 2004 ; 김명훈, 「전자기록 환경에서의 평가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11, 2005 ; 이승억, 「기록평가 선별 결정 분석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12, 2005.

동적인 보관자로서의 역할을 넘어 미래를 위해 새로운 세계의 기록정보로부터 관리 가능한 역사기록을 구성하는 역할을 떠맡게 되면서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³⁾

서구의 이러한 경험은 일정한 가치 기준에 따라 기록물을 선별·보존해야 한다는 기록 평가에 대한 요구를 불러일으켰으나, 한국에서는 기록을 생산하여 원본 그대로 출처에 따라 보관해야 한다는 아카이브적 사고가 1980년대까지도 자리를 잡지 못했다. 일제시기 조선총독부는 기록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아카이브즈를 설치하지 않았고 통치와 관련된 행정가치 중심의 문서 유통 및 보존관리에 급급했다. 또한 경찰 및 관방기록 등 비밀기록을 별도 관리하고, 비공개(폐기) 관행을 확대하였다. 이러한 관행과 무지는 해방 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도 청산되지 못해 많은 공문서들이 제대로 보존되지 못했다. 이에 현존하는 총독부 공문서는 행정적 가치중심의 예규 및 법규성 문서와 인사관계 문서, 증빙성 문서 등이 영구보존 문서로 분류되었다가,⁴⁾ 일제 패망시 무단 폐기를 모면하여 보존되어 있는 것이다.

본고는 현재 국가기록원에 소장되어 있는 조선총독부 공문서 중 도시계획 관련 문서에 대한 기록학적 평가의 일환이다.⁵⁾ 이미 영구보존 문서로 결정되어 보존되고 있는 공문서에 대한 평가를 한다는 것은 ‘재평가’⁶⁾의 의미를 가질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처분(폐기, 재이관,

3) F. Gerald Ham 저, 강경무·김상민 역, 『아카이브와 매뉴스크립트의 선별과 평가』, 진리탐구, 2002, 14~15쪽.

4) 이경용, 「조선총독부의 기록관리체제」 『기록학연구』 10, 2004, 269쪽.

5) 현재까지 이루어진 조선총독부 공문서 평가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이승일, 「조선총독부 공문서의 기록학적 평가 -조선총독부 도시계획 관련 공문서군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12, 2005 ; 김경남, 「일제강점기 부산지역 시가지 계획에 관한 공문서」 『港都釜山』 21, 2005 ; 김익한, 「불균형 잔존 행정기록의 평가방법 시론 - 조선총독부 공문서의 평가절차론 수립을 위하여」 『기록학연구』 13, 2006.

6) 재평가는 과거에 부적절하게 내려진 평가 결정을 정정하고 더 이상 타당성이

매각 등)을 전제로 하는 ‘재평가’가 아니라는 점에서 오히려 역사학의 해제작업과 유사한 성격을 띠 수도 있다. 각 행정단위의 기록관(Records Office)과는 달리 국가기록원(National Archives)은 한 나라의 역사와 정체성의 상징이며 역사기록의 寶庫, 미래 역사연구의 사료가 모여 있는 중심센터이고, 역사가가 이러한 아카이브즈의 주 이용자라는 면에서 아카이브즈의 기록을 평가하는 작업의 특성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국가기록원 소장 총독부 공문서 중 조선시가지계획 관련 문서 60여철을 미시적(micro)으로 분석, 분류·기술하고 평가하여 이미 역사사료로 보존되고 있는 공문서의 활용방안을 모색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조선시가지계획은 1934년 「조선시가지계획령」 공포로 시작되었고, 그것은 한국 근대 도시계획의 본격적인 시작이자 원형이 되었다. 이에 조선시가지계획 자체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이루어졌다. 그러나 시가지 계획 관련 공문서는 정책을 입안·결정·실행했던 주체들이 직접 생산한 자료임에도 그간 연구에는 많이 활용되지 못했다.⁷⁾ 개별 문서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연구나 개인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으나, 총독부 공문서가 갖는 기록(archive)으로서의 특징과 가치를 정리하여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기록평가(archival appraisal)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한 시론적 출발이라 할 수 있다.

없다고 판단되는 평가 결정을 변경하는 컬렉션 관리도구이다. 재평가를 통해 거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된 기록물을 처분할 수 있다 (F. Gerald Ham 저, 강경무·김상민 역, 앞의 책, 173쪽).

- 7) 이상민, 『역사를 위하여 : 아키비스트와 역사가의 역할』 『기록학연구』 6, 2002, 250쪽.
- 8) 현재 국가기록원에서는 총독부 공문서에 대한 목록제공과 해제작업을 통해 개별 문서의 내용을 홍보하여 보다 적극적인 활용을 돕고 있다.

2. 조선총독부의 「조선시가지계획령」 제정과 운용

1934년 식민지 조선의 본격적인 도시계획 법령인 「조선시가지계획령」(제령 제18호, 1934.6.20, 이하 시가지계획령)⁹⁾이 공포되었다. 시가지계획령 공포에 대해 총독부 당국은 “합방 이래 문화가 급격히 진보하고, 기성시가지의 통제되지 않는 팽창, 돌연한 신시가지의 출현 등이 있어 지금 도시시설에 관한 근본제도를 확립하여 그 지도표준을 정하지 않으면 안된다”¹⁰⁾ 라는 입장을 밝혔다.

시가지계획령은 총칙, 지역·지구지정 및 건축물 등 제한, 토지구획정리의 전문 3장 50조로 구성되었으며, 이미 1919년 일본 본토에서 공포된 도시계획법과는 차이가 있었다. 일본의 도시계획을 위한 법령은 도시계획법, 도시계획위원회관제, 시가지건축물법의 3가지로 구성되었다.¹¹⁾ 반면 시가지계획령은 일본의 「도시계획법」과 「시가지건축물법」을 하나로 묶었고, 관동대지진 후의 특별도시계획법(1923)의 내용도 포

9) 「조선시가지계획령」은 일본의 「도시계획법」을 母法으로 하면서도 법령 명칭을 ‘시가지계획령’이라 한 것에 대해서 총독부는 “「도시계획법」은 기성 도시의 개량을 목표로 하였지만, 「시가지계획령」은 기성시가의 확장과 신시가의 창작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牛島省三(총독부 내무국장), 「朝鮮市街地計劃令の發布に就て」 『朝鮮』 1934년 7월호, 92쪽)이라고 했다. 그러나 손정목은 이상의 이유 외에 “일본 정치의 군부 장악과 관련해 본국과 식민지의 위계 질서를 표현하기 위해 도시-시가지로 구분”한 점도 있다고 보았다 (孫禎睦, 『日帝強占期 都市計劃研究』, 일지사, 1990, 184-186쪽).

10) 牛島省三, 「朝鮮市街地計劃令の發布に就て」 『朝鮮』 1934년 7월호, 92쪽.

11) 「도시계획법」은 도시계획의 내용과 도시계획 사업의 절차 등이 주된 내용으로 전체적인 측면에서 도시계획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시가지건축물법」은 그 주된 내용이 건축물에 대한 내용이지만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지역과 지구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는 시가지건축물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도시계획위원회관제」는 도시계획을 실질적으로 심사하고 운영하기 위한 법령이다 (이명규, 「한국과 일본의 도시계획체도의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94).

함되었다.¹²⁾ 시가지계획령 중 건축물법 관계 조항을 제외하고, 사업의 특징을 보여주는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총칙

제1조 본령에 있어 시가지계획이라 함은 시가지의 창설 또는 개량을 위하여 필요한 교통, 위생, 보안, 경제 등에 관한 중요시설의 계획으로서 시가지계획 구역에 대해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 시가지계획 구역 및 시가지계획은 그 구역에 관계있는 부회, 읍회 또는 면협의회의 의견을 듣고 조선총독이 이를 결정한다.

제3조 시가지계획사업은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의해 행정청이 이를 집행한다. 조선총독이 특별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청이 아닌 자로 하여금 그 출원에 의해 시가지계획사업의 일부를 집행케 할 수 있다. 시가지계획사업 집행자는 사업 착수 전에 그 실시계획에 관하여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집행자가 행정관청일 때에는 조선총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 시가지계획사업의 집행에 요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의해 시가지계획사업으로 인해 현저히 이익을 받는 자로 하여금 그 받는 이익의 한도 내에서 同條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케 할 수 있다.

.....

제2장 지역 및 지구의 지정과 건축 등의 제한

제15조 조선총독은 시가지계획 구역 내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

12) 越澤明(이명규 역), 「동아시아에서 近代都市計劃의 成立과 展開」 『東洋都市史 속의 서울』, 222쪽.

제21조 조선총독은 시가지계획 구역 내에 風致地區를 지정하고 그 지구 내에 토지의 형질 변경, 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대수선 혹은 제거, 물건의 부가증치, 竹·木·土·石의 종류의 채취 기타 풍치 유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해 필요한 규정을 설치할 수 있다.

제22조 조선총독은 시가지계획 구역 내에 美觀地區를 지정하고 그 지구 내에 건축물의 구조, 설비 또는 부지에 관해 미관상 필요한 규정을 둘 수 있다.

제23조 조선총독은 시가지계획 구역 내에 放火地區를 지정하고 그 지구 내에 방화 설비 또는 건축물의 방화 구조에 관해 화재예방 상 필요한 규정을 둘 수 있다

제24조 조선총독은 시가지계획 구역 내에 風紀地區를 지정하고 그 지구 내에 건축물 또는 영업에 관해 풍기 상 필요한 규정을 둘 수 있다

제3장 토지구획정리

제42조 본장에 있어 토지구획정리라고 칭하는 것은 토지의 垆地로서의 이용을 증진하는 목적으로 본장의 규정에 의해 토지의 교환, 분합, 지목 변환, 기타의 구획 형질의 변경 또는 도로, 광장, 하천, 공원 등의 설치, 변경 혹은 폐지를 행함을 말한다

제43조 시가지계획 구역 내의 토지에 관해서는 토지구획정리를 시행할 수 있다.

제44조 시가지계획으로서 결정된 토지구획정리에 관해서는 그 시행 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는 조선총독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그 시행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토지 소유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해 토지구획정리 시행 인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또는 신청하였을지라도 그 내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선총독은 행정청으로 하여금 토지구획정리를 시행케 할 수 있다.

.....

제48조 제4조의 규정에 의해 행정청이 시행하는 토지구획정리에 요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공공단체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리 시

행지구내의 토지의 소유자 또는 관계인으로 하여금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케 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가지계획령의 특징을 정리하면 첫째, 법령 명칭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기성시가의 개량보다 기성시가의 확장 및 신시가의 창설에 주안점을 두었다(제1조).¹³⁾ 둘째, 시가지계획에 대한 결정 및 집행권을 총독에게 귀속시키고 법적 지위를 갖는 심의, 자문기관을 설치하지 않았다(제2조, 제3조). 일본 「도시계획법」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중앙, 지방) 설치를 법적으로 규정했으나, 조선에서는 일단 내훈으로 총독부 내에 시가지계획위원회를 설치했다.¹⁴⁾ 셋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 일본에서는 조합 시행을 원칙으로 했음에도 조선은 국가 시행(행정 주도)을 분명히 규정하여 시행과정에서 토지소유자들의 사적 이해를 최대한 차단하고자 했다(제44조).¹⁵⁾ 그럼에도 토지구획정리사업 비용은 철저히 수익자부담 원칙이었다(제4조, 제48조). 이것은 「조선도

13) 일본 도시계획법과 조선시가지계획령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도시계획법	조선시가지계획령
법의 목적 및 이념 (제1조)	도시계획이라 칭함은 교통, 위생, 보안, 경제 등에 관해 영구히 공공의 안녕을 유지하고 또는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시설의 계획	시가지계획이라 함은 시가지의 창설, 또는 개량을 위하여 필요한 교통, 위생, 보안, 경제 등에 관한 중요 시설의 계획

14) 내훈에 의해 조직된 조선시가지계획위원회는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었다. 이에 추후적으로 이미 활동하고 있는 시가지계획위원회의 법적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1940년 「조선시가지계획령」을 개정하였고, 이에 따라 1941년 칙령으로 「시가지계획위원회관계」를 공포했다.

15) 엽복규, 「1930~40년대 京城市街地計劃의 전개와 성격」 서울대 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0, 15쪽. 조합 시행을 인정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총독부는 “1)지주에 의해 사전에 계획을 작성하는데 비용이 들며 경험도 없다. 內地에 있는 부채지주(회사 등)가 많고 동의도 하지 않으며 조선인은 경험도 없다 2) 도로, 공원, 시장 등 다른 계획사업과 상응해 행정청 시행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했다 (越澤明(이명규 역), 앞의 논문, 223쪽).

시계획령」이 재원 확보 문제로 좌절되었을 때 제기되었던 문제였는데, 결국 강력한 행정권력을 바탕으로 시행되었다.¹⁶⁾

시가지계획령은 아래 <표3>과 같이 1934년 나진을 시작으로 1945년 8월까지 43개 도시에 적용(그 중 길주, 고원은 準用)되었다. 그 내용은 대부분 계획구역, 가로망, 토지구획정리가 하나의 세트로서 거의 동시에 결정되었다. 그 중 핵심적인 것은 토지구획정리였다. 토지구획정리는 ‘토지의 매수 없이 관계지역의 지주로부터 토지를 공출케 하여 도로용지 등을 취득하려는 값싼 도시개조수법’ 또는 ‘값싼 공공시설 정비수법’이었다.¹⁷⁾

시가지계획령은 1938년 「시행규칙」 개정과 1940년 「조선시가지계획령」 개정이 이루어졌다. 1938년 「시행규칙 개정」(府令 제193호, 1938.9.21)에서는 제1조 제1호의 ‘一團의 주택경영’을 ‘一團의 주택지경영, 一團의 공업용지조성’으로 개정했다.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은 1937년 중일전쟁 도발 이후 군수공업의 비약적 성장을 기한다는 국책적 임무 수행에 부응하는 조치였고, ‘일단의 주택지경영’은 대규모 공업단지 조성에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근로자의 주택지 마련을 위한 조치였다. 주택지와 공업용지가 모두 조성된 곳은 청진, 대구, 신의주, 인천, 진남포, 해주, 양시, 다사도, 경인, 부산, 삼척·묵호의 11개 지역이고, 주택지 경영만 이루어진 곳이 경성, 부산, 평양, 원산, 흥남의 5개 지역, 공업용지만 조성된 곳은 나진, 순천 2개 지역이었다.

1940년에는 시가지계획령 개정이 있었다.¹⁸⁾ 제1조의 ‘교통, 위생, 보

16) 시가지계획령 하 모든 구획정리사업은 수익자부담금으로 공사비가 전액 충당되었는데, 나진부에서는 이와 별도로 토지증가세제도를 채택했다.

17) 孫禎陸, 앞의 책, 1990, 254쪽. 일본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도시계획의 주된 방법으로 자리잡은 것은 1923년 관동대진재 이후 帝都復興事業부터였다. 특히 나고야의 토지구획정리는 가장 대표적이었고, 총독부의 今井田 정무총감은 이를 주도했던 나고야市 토목과장 출신 岡崎早太郎을 초빙해서 시가지계획령의 초안을 작성했다.

안, 경제 등에 관한 중요시설 계획'에 '防空'을 추가했다. 이제 시가지 계획령은 “국토계획에 따라 공업입지를 기초하고 또 防空的 觀點에 입각한 새로운 견지에서 도시계획을 수립”¹⁸⁾하는 것으로 바뀐 것이다. 전쟁의 확대로 일본 본토뿐만 아니라 한반도, 만주지역까지도 공습이 확대될 우려가 커지면서 '綠地地域. 風致地區, 公園'을 정하여 防空 및 疏開에 대비하자는 것이었다. 이에 1943년 시가지계획위원회에서는 기존 계획도시에도 녹지나 공원지역을 설정하는 계획안을 추가하고, 새로 지정된 지역도 이에 준하도록 했다.

3. 시가지계획 관련 공문서의 분류 및 평가

1) 총독부 공문서의 기록 평가와 의의

현존하는 총독부 공문서는 대부분 영구보존(甲種) 문서로 분류된 것이다. 조선총독부는 공문서 보존기간 책정과 관련하여 1911년 '처무규정'에서 보존기한을 5단계(甲種·영구·乙種·30년·丙種·10년·丁種·3년·戊種·시행완료)로 나누었다. 이것은 1922년 처무규정에서 갑종·을종·병종·정종의 4단계로 개정되어 이후 조선총독부 문서구분에 적용되었다. 보존기한의 구분은 “각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서”라는 추상적 기준 외에 공문서의 구체적인 보존기한 책정기준은 찾아볼 수가 없다. 이에 道단위 이하의 공문서 보존기한 책정의 근거가 된 규정을 토대로 어떤 문서들이 영구문서로 책정되었는지 살펴보자.

18) 관보 제4173호, 1940년 12월 18일자, 「조선시가지계획령개정」(제령 제41호, 1940.12.18)

19) 민족문제연구소 편, 「昭和18年 제84회 제국의회설명답변 자료(鑛工)」 『일제하 전시체제기 정책사료총서』 제21권, 255쪽.

〈표1〉 조선총독부 지방행정문서의 갑종(영구보존)문서 분류 규정

道	府郡		邑面	
1932년 전라남도 처무규정(4단계 보존기한 구분)	1913년 府郡처무규정준 칙(3단계 보존기한 구분)	1913년 황해도 郡처무규정준칙 (3단계 보존기한 구분)	1923년 함경북도 읍면처무규정(3단 계 보존기한 구분)	1934년 강원도 읍면처무규정(4 단계 보존기한 구분)
1. 道令, 道達, 훈령, 지령 예산 기타 장래 例規徵證이 될 서류 2. 稟議, 稟申 및 통계보고 등 중요한 서류 3. 官吏吏員 및 학교 직원의 진퇴상벌에 관한 중요한 서류 4. 연혁 역사의 참고가 될 서류 5. 회계세무에 관한 것, 기타 영구보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서류	1. 府郡에서 발한 훈령, 통첩 등 예규로 삼을 만한 서류 2. 허용의 지령과 관련된 각종 稟請, 請願 등으로 영속적인 성질을 갖는 사건에 관한 서류 3. 역사의 徵考로 해야 할 서류 4. 諸種의 대장 원부류 5. 前 各号외에 영구참조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서류	1. 예규 2. 허용의 지령을 받은 각종의 稟請, 청원 등으로 영속할 성질을 가진 사건에 관한 서류 3. 역사의 徵考가 될 서류 4. 諸種의 대장 원부의 類 5. 세무증빙서류 6.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계표 7. 전 각호의 외 영구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서류	1. 읍면규정 기타 장래의 예규징증이 될 서류 2. 역사의 徵考가 될 서류 3. 회계서무 기타 각종통계 및 도표 및 諸種의 대장 원부류 4. 호적거주 및 인감에 관한 서류 5. 중요한 신청 제보고 및 왕복서류 6. 면협의회 자문에 관한 것 7. 직원의 이력진퇴 및 상벌에 관한 서류 8. 前 各号의 영구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1. 읍면규칙, 감독관청의 훈령지령, 기타 장래의 例規徵證이 될만한 서류 2. 諸 대장 원부 및 도서류 3. 중요한 신청, 보고 및 왕복서류 4. 역사의 徵考가 될 만한 서류 5. 직원의 이력, 진퇴 및 상벌에 관한 서류 6. 前 各号 외 영구보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서류

출전 : 이경용, 「조선총독부의 기록관리제도」 『기록학연구』 10, 2004. 249~257쪽.

<표1>은 道·府郡·邑面 단위의 처무규정에 나타난 영구보존문서 책정 기준이다. 각 행정단위별로 집행하는 업무와 사안이 차이가 있어 영구보존문서 책정 기준도 조금씩 차이가 있다. 그러나 대체로 예규 등의 법규성 문서는 거의 영구로 분류되었다. 지방행정의 성격 상 수세 부과와 징수에 관련하여 증빙할 문서(원부 및 대장류)도 영구로 분류되었다. 식민통치기구의 가장 말단행정기관인 면 단위에서는 대민통치의 매개 역할을 했던 면협의회의 회의록이나 자문 관련 문서도 중요하게 취급되었다.²⁰⁾ 지방행정기구와 총독부 본부의 보존기한 구분에는 일정 정도 차이가 있겠지만 대체로 공통적으로 포함된 ‘역사에 徵考가 될 만한 서류’라는 항목 외에 기본적으로 행정적 가치가 중요시 되었다.

이미 영구보존문서로 분류되어 보존된 문서이지만, 총독부 공문서에 대한 기록(재)평가를 해야 할 이유는 첫째, 당대 문서 보존기한 분류기준이 정확히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존 문서가 어떠한 맥락에서 보존되고 있는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현재 생산되고 있는 공문서에 대한 평가에 대한 역사적 사례를 제시할 수 있다. 둘째, 문서의 可讀性이 떨어져 일반인이나 연구자의 경우도 문서 활용에 있어 상당한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셋째, 당대 문서 분류규정에도 ‘역사에 徵考가 될 만한’ 문서라는 항목이 있듯이, 기록은 역사 복원과 이해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현재 보존되어 있는 기록의 가치를 정확히 드러내어 보존기록의 활용가치를 높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도시계획 관련 총독부 공문서는 어떠한 내용을 가진 문서이며, 그 기록 가치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총독부 공문서는 셀렌버그적 기록 가치 정의에 따르면 비현용단계의 2차 가치(계속적 가치)를 갖는 기록으로 증거 가치와 정보 가치를 포함하는 기록이라 할 수 있다.²¹⁾ 이러한 셀렌버그의 가치론에 대해 기록은 기록 자체가 아니라

20) 이경용, 「조선총독부의 기록관리제도」 『기록학연구』 10, 2004. 257쪽.

사회의 투영으로서 실재하는 것이라는 붐스(H.Booms)의 논의,²²⁾ 햄(G.Ham)을 필두로 한 1980년대 미국 아키비스트들의 전 사회적 차원에서 협동적인 기록 수집을 추구하는 ‘도큐멘테이션’ 전략,²³⁾ 쿡(Terry Cook)의 거시적 기능평가론²⁴⁾ 등 기록 선별·평가에서 기록의 개별 가치보다 사회의 표상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어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

이런 논의를 적극 수용하여 총독부 공문서 평가에서도 당대의 사회적 컨텍스트를 분석하고, 총독부 조직 및 기능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기록의 가치를 평가하려는 연구가 이루어졌다.²⁵⁾ 이 연구에서 제시된 기록 가치 평가의 기준에 의해 도시계획 관련 총독부 문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록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
- 21) T.R.Schlenberg, “The Appraisal of Modern Public Records”, *National Archives Bulletin* 8(Washington:NARS, 1956) (오항녕 편역, 「현대 공공기록의 평가」 『기록학의 평가론』, 진리탐구, 2005).
 - 22) Hans Booms, “Society and Formation of a Documentary Heritage; Issues in the Appraisal of Archival Sources”, *Archivaria*24(Summer 1987) (오항녕 편역, 「사회와 기록유산의 형성」 『기록학의 평가론』, 진리탐구, 2005).
 - 23) Abraham, Terry, “Collection Policy or Documentation Strategy: Theory and Practice”, *American Archivist* 54(Winter 1991).
 - 24) Terry, Cook, “Macro-appraisal and functional analysis; Documenting governance rather than government” *Journal of the Society of Archivists*, Vol.25, No.1(2004).
 - 25) 이승일, 「조선총독부 공문서의 기록학적 평가 -조선총독부 도시계획 관련 공문서군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12, 2005.

〈표2〉 조선총독부 공문서의 조직 및 기능 분석에 따른 기록평가 기준

기록평가 기준		도시계획 문서 적용
조직 위계	상 위	* 조선총독부 정책결정 및 조율기구(국장회의) * 정책 협의 및 자문조직(총독직속 각종 위원 회 등) 시가지계획위원회 문서
	중 간	* 조선총독부 정책입안 및 집행 조직 (총독부 各局) * 조선총독부와 조선인들의 상호작용을 반영 하는 지방조직(부회, 읍회, 면협의회) * 총독부 내무국 토목 과의 시가지계획 사 업 집행문서 * 도시계획 관련 지방 자치단체 답신서
기능 위계	상 위	* 해당업무의 정책 결정 및 심의·자문기능 여부 * 칙령·법률에 의한 업무 * 제령에 의한 업무 * 해당사안의 결재권자(총독, 정무총감 결재사안) * 총독부 당국과 조선인들의 상호작용 반영 여부(지방자치단체 생산문서) * 해당기관의 핵심적 기능 여부 * 해당업무가 여러 조직과의 관련 여부 * 시가지계획위원회 문서 * 「시가지계획령」에 의한 사업문서
	중 간	* 훈령·부령에 의한 업무 * 총독부 소속기관(지방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업무 * 道 토목과의 시가지 계획 사업관련 문서
중 요 기 록 유 형	정책결정문서, 회의록(의사록), 정책결정 근거서류, 도면	

출전 : 이승일, 「조선총독부 공문서의 기록학적 평가 -조선총독부 도시계획 관련
공문서군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12, 2005. 218·223~224쪽.

조선총독부의 조선 도시계획 프로세스는 시구개정 - 「도시계획령」
제정 구상 - 「시가지계획령」 제정과 시가지계획 실시로 볼 수 있는데,
이 중 법적 근거(制令)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가장 광범위하게 실시한
정책은 시가지계획이었다. 따라서 도시계획 범주에 해당하는 다양한
문서군 중 시가지계획 관련 문서군이 일제시기 도시계획 관련 공문서

중 가장 핵심적 사안을 반영하는 문서라 할 수 있다. 시가지계획령 하에 내무국 토목과에서 생산한 사업 계획·집행 문서는 구체적 사업 집행 과정과 그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시가지계획위원회 문서는 시가지계획위원회가 정책 결정 기능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으나 정책을 검토·자문하는 역할을 했으며, 그 검토 사안이 조선총독에 의해 대부분 그대로 정책으로 결정되었다는 점에서 위원회에 제출되어 편철된 문서들(회의록, 제출의안, 답신서 등)은 시가지계획의 가장 중요한 정책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현존 문서는 당시 문서분류규정에 따라 체계적이고 균질적으로 관리·보존되지 못했으므로 문서 자체로 일제시기 시가지계획의 전모와 그 특징을 재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미 밝혀진 시가지계획의 역사적 맥락과 그것을 담당했던 조직의 기능을 토대로 남겨진 기록의 평가가 필요한 것이다.

2) 시가지계획 관련 공문서의 분류 및 평가

본 연구의 분석 대상 공문서(국가기록원 소장)는 1934년 「조선시가지계획령」 공포 이후 실시된 시가지계획 관련 문서군(Series)의 문서 63철(Files)이다.²⁶⁾ 시가지계획 관련 문서군은 크게 각 계획 대상지역별 사업실행문서와 시가지계획위원회 문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시가지계획 사업실행 문서

먼저 각 지역별 사업실행문서는 시가지계획의 사업 내용인 구역, 가

26) 시가지계획사업의 근간이 되는 토지수용과 예산관련 문서는 매우 중요하지만, 문서의 특성 상 시가지계획 자체의 특성이나 정책 내용을 담고 있지 않고, 개인 권리에 대한 증빙서류로서의 가치가 더 높아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서는 제외했다.

로망, 토지구획정리 관련 문서철로, 시가지계획 적용 도시 총 41개(준용지역 길주·고원 제외) 중 23개 지역에 대한 사업 문서가 남아있다. 이에 대한 현존 문서는 56철로 그 실태는 <표3>과 같다. 23개 지역의 시가지계획 관련 문서 역시 사업에 대한 모든 문서가 남아있는 것은 아니다. 대체적인 지역 조사에 대한 문서만 남아있는 곳과 시가지계획 3종 세트라 할 수 있는 ‘계획구역, 가로망, 토지구획정리’에 관한 계획과 시행과정에 대한 문서가 모두 남아있는 곳 등 관련 공문서의 내용도 편차가 크다.

시가지계획 관련 문서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 문서이다. 나진, 대구, 부산, 함흥, 부여, 진주지역만 가로망에 대한 별도의 문서가 존재할 뿐, 시가지계획의 구역 설정이나 가로망에 대한 별도의 문서는 많지 않다. 대부분의 문서는 토지구획정리 관련 문서로서, 이것이 시가지계획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었음을 알 수 있다. 1938년 시행규칙 개정에 의해 추가된 ‘일단의 주택지 경영’과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 사업에 관한 문서는 사업이 실시된 18개 지역 중 대구, 인천, 평양지역의 것만 남아 있다.

한편 1940년 「조선시가지계획령」 개정으로 ‘防空’을 위한 ‘녹지지역·풍치지구·공원’ 지정에 관한 문서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전시체제하에 전쟁수행을 위해 식민지 조선에서 시행한 각종 정책에 대한 공문서는 상당 부분 폐기되어 보존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도시계획 문서의 경우도 시가지계획이 전쟁 수행을 위한 ‘국토 개발’과 ‘防空’·‘疏開’ 목적으로 전환된 과정이나 그에 따른 정책 입안·실행 문서는 보존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뒤에 살펴볼 시가지계획위원회 문서의 경우에도 1940년 이후 유일하게 개최된 제6회 시가지계획위원회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표3〉 시가지계획령 적용 도시 및 사업내용과 현존 조선시가지계획
관련 문서 실태

	문서양식			사업관련 계획 적용 일시	위원 검 토	사업내용 / 관련 문서여부					녹지 풍치· 공원#
	기록철(Files)명	생산 년도	생산 기관			구역	가로	구획 정리	주택 *	공업 **	
나진	나진 시가도로공사	1934 -41	내무국 토목과	1934. 11.20		■	■	■		■	
경성	경성신시가지계획 및 토지구 획정리 결정관계철	1936 -37	내무국 토목과	1936. 3.26	1회, 2회, 4회	■	■	■	■		■
청진	청진시가지계획사업 제2토지 구획정리 실시계획 인가의 건	1938 -40	내무국 토목과	1936. 3.26	1회	■	■	■	■	■	
	청진시가지계획사업 제2토지 구획정리 환지예정지 지정에 관한 건(함경북도)	1938	내무국 토목과					◎			
	청진시가지계획사업 제3토지 구획정리공사 준공기한 연기 의 건(함경북도)	1939 -42	내무국 토목과					◎			
성진				1936. 4.20	1회, 6회	■	■	■			■
대구	국고보조 대구 시가도로 및 하수공사 준공인가의 건	1937 -41	내무국 토목과	1937. 3.23	3회	■	■	■	■	■	
	대구시가지계획사업 제1토지 구획정리 실시계획 인가의 건	1940 -43	내무국 토목과					◎			
	대구시가지계획사업 제1토지 구획정리 실시계획 인가의 건	1944 -45	광공국 토목과					◎			
	대구시가지계획사업 제3토지 구획정리 실시계획 인가의 건	1943	사정국 토목과					◎			
	대구시가지계획 일단주택지 경영사업실시계획 인가의 건	1942 -43	사정국 토목과						◎		
	대구시가지계획 일단공업용지 조성에 따른 일단주택지 경영 사업 준공기한 연장의 건	1941 -43	내무국 토목과						◎	◎	
	시가지조사서	1942 -43	대구부 토목과				◎	◎	◎		
	대구부 시가지공사	1942	대구부					◎			

	함흥시가지계획사업 제3구 토지구획정리(함경남도)	1939	내무국 토목과				◎				
	함흥시가지계획사업 제3구 토지구획정리 (환지에정지 지정조서)	1939	내무국 토목과				◎				
	함흥시가지계획사업 제4구 토지구획정리 (함경남도)	1939 -41	내무국 토목과				◎				
	함흥시가지계획 토지구획정리 환지에정지 지정의 건(제4구)	1942	사정국 토목과				◎				
	함흥시가지계획 가로 사업에 따른 동건축부지 조성사업 (함경남도)	1937 -41	내무국 토목과				◎				
	함흥시가지계획(건축부지조 성 가로 토지구획정리)사업 실시계획 변경 건(함경남도)	1943 -44	사정국 토목과				◎	◎			
	함흥시가지계획사업 제해부 흥 토지구획정리(함경남도)	1940 -44	내무국 토목과				◎				
원산	원산시가지계획사업 제1토지 구획정리 실시계획 인가의 건	1940 -44	내무국 토목과	1938. 5.7		■	■	■	■	◎	
전주				1938. 5.9		■	■	■			
군산	군산도시계획결정	1938	내무국 토목과	1938. 5.9		■	■	■	◎	◎	
춘천	강릉춘천도시계획결정	1940	내무국 토목과	1938.		■	■	■	◎	◎	
	춘천시가지계획사업 제1토지 구획정리공사(강원도)	1939 -42	내무국 토목과	5.9				◎			
대전	대전 도시계획결정	1937 -38	내무국 토목과	1938.		■	■	■	◎	◎	
	대전시가지계획사업 제1토지 구획정리 정리공사	1941 -43	내무국 토목과	5.12				◎			
개성	강릉춘천도시계획결정	1940	내무국 토목과	1938. 11.11		■	■	■	◎	◎	
진남포				1939. 6.17		■	■	■	■	■	
청주				1939. 10.31	4회	■	■	■			

부여	도시계획결정 지적고시관계 (충남 부여군)	1939	충남	1939. 10.31	4회	■	■	■						
	부여시가지계획 제1구 토지 구획정리공사(충청남도)	1940	내무국 토목과				◎							
	국고보조 부여 시가도로공사 준공인가(충남)	1940	내무국 토목과				◎							
	부여시가지계획 시장물건조 서(충남부여군부여면)	1942	충남 부여군				◎							
	개인별 토지대장 (부여시가 지토지구획정리 제2공지구)	1942	충남 부여군				◎							
	부여시가지계획 설계서	1939	충남 부여군				◎							
	부여시가지계획도면 부소산 도시공원도면	1942	충남 부여군				◎							
광주				1939. 10.31	4회	■	■	■						
해주	해주시가지계획사업 제1토지 구획정리 실시계획 인가의 건	1941	내무국 토목과	1939. 10.31	4회	■	■	■	■	■				
	해주시가지계획사업 제2토지 구획정리 실시계획 인가의 건	1942	사정국 토목과				◎							
홍남				1939. 10.31	4회	■	■	■	■					
양시				1939. 11.6	4회	■			■	■				
다사 도	다사도시가지계획 토지구획 정리 실시계획인가의 건	1942	사정국 토목과	1939. 11.7	4회, 6회	■	■	■	■	■	■			
경인				1940. 1.19	5회, 6회	■	■	■	■	■	■			
강릉	강릉춘천도시계획결정	1940	내무국 토목과	1940.		■	■	■						
	강릉시가지계획사업 재해부 흥 토지구획정리공사(강원도)	1942	사정국 토목과		12.10		◎							
진주	진주시가지계획사업 봉산도 지구획정리공사에 관한 건 (경상남도)	1942	사정국 토목과	1941. 1.27		■	■	■			◎			

	시가지 가로 및 세도확정 승 인신청(진주부)						◎				
안동				1941. 1.28			■ ■ ■				
홍원				1941. 1.28			■ ■ ■				
여수				1941. 1.29			■ ■ ■				
제천	제천시가지계획사업 재해부 흥 토지구획정리 실시계획 인가의 건	1941 -43	내무국 토목과	1941. 2.19			■ ■ ■		◎		
보산	보산시가지계획 제1토지구획 정리 실시계획 인가의 건(평 안남도)	1943 -44	사정국 토목과	1941. 4.5	6회		■		◎		■ ■ ■
순천				1941. 4.12			■ ■ ■				■
마산				1941. 4.19			■ ■ ■				
삼척 목호	강릉춘천도시계획결정	1940	내무국 토목과	1941. 4.26			■ ■ ■ ■ ■	◎ ◎ ◎			
단천				1941. 4.26			■ ■ ■				
만포				1942. 7.8			■ ■ ■				
수원				1944. 8.10	6회		■ ■ ■				■
삼천포				1944. 8.10	6회		■ ■ ■				■

주: ■는 해당지역에 실시된 사업, ◎는 사업관련 문서

*주택. **공업용지는 1938년 시행규칙 개정으로 실시된 ‘一團의 주택지경영, 一團의 공업용지조성’ 사업.

#녹지·풍치·공원은 1940년 시가지계획령 개정으로 防空 및 疏開를 위해 ‘綠地地域·風致地區·公園’ 지정(다사도는 녹지지역·공원 지정, 보산·삼천포는 녹지지역만 지정)

시가지계획 사업실행문서에서 주목할 것은 도시계획결정 문서이다. 이러한 문서철은 다음과 같이 총 6개이고, 문서의 대상 지역은 9개 지역이다. 도시계획결정 문서철은 해당 지역 시가지계획(구역, 가로, 토지구획정리)의 결정 내용을 알 수 있는 결정이유서, 계획 변경에 대한 사유와 변경이유서, 계획에 대한 관련 지역 면협의회의 답신서 등이 편철되어 있다. 이들 문서철은 일목요연하게 해당 지역의 사업 전모와 프로세스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자체의 내용을 파악하는 직접적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의 역사적 평가를 내리는데도 효율적인 기록이라 할 수 있다.

〈표4〉 도시계획결정 문서철

지역	문서철명	관리기호	계획적용일	위원회검토여부
경성	경성신시가지계획 및 토지구획정리 결정관계철	CJA0022534	1936.03.26	1회,2회,4회
목포	목포도시계획결정	CJA0022543	1937.03.23	3회
부산	부산도시계획결정 ²⁷⁾	CJA0022542	1937.03.23	3회,6회
군산	군산도시계획결정	CJA0022554	1938.05.09	검토안함
춘천	강릉춘천도시계획결정	CJA0022590	1938.05.09	검토안함
대전	대전도시계획결정	CJA0022553	1938.05.09	검토안함
개성	강릉춘천도시계획결정	CJA0022590	1938.11.11	검토안함
강릉	강릉춘천도시계획결정	CJA0022590	1940.12.10	검토안함
삼척·목호	강릉춘천도시계획결정	CJA0022590	1941.04.26	검토안함

27) 이 문서철에 대한 분석과 해제는 김경남, 「일제강점기 부산지역 시가지계획에 관한 공문서」 『港都釜山』 21, 2005 참고.

그렇다면 도시계획결정 문서철은 어떠한 기록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일례로 「대전도시계획결정」 문서철의 건(Item)과 첨부문서의 내용을 살펴보자. 이 문서철에는 총 5건(Item)의 기록이 편철되어 있고, 각 건별로 여러 개의 첨부문서가 있다. 문서철의 건별 구체적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 「대전도시계획결정」 문서철 분석 - 건명 목록, 건별 내용 분석서 〉

기록철명	원철명	대전 도시계획결정		
	정리철명	대전 도시계획결정(1938)		
생산년도	1937-1938년			
생산기관	내무국 토목과			
보존기간	갑종(영구)			
소장기호	CJA0022553			
Item				
일련 번호	건 명	결재(발송)일	기안(발 신)부서	첨부 문서
1	대전시가지계획 구역, 동 가로 및 동 토지 구획정리지구를 좌와 같이 결정하여 그 관 계 도면은 충청남도청, 대전부청 및 外南, 愼德, 柳川 등 각 면사무소에 비치하여 공 람에 제공함	1938-05-12	총독	
2	대전시가지계획 구역, 동 가로 및 동 토지 구획정리지구 결정에 관한 건	1938-05-03	내무국 토목과	4건
3	시가지계획 결정에 관한 건	1937-12-03	내무국 토목과	10건
4	대전시가지계획 구역, 동 가로 등 결정에 관한 건	1937-11-10	내무국 토목과	4건
5	대전시가지계획 구역, 동 가로 및 동 토지 구획정리지구 결정에 관한 건	1937-10-04	내무국 토목과	3건

기록건명	대전시가지계획 구역, 동 가로 및 동 토지구획정리지구 결정에 관한 건		
문서번호	土 제164호		
기안부서 (발신자)	내무국 토목과	기안일자	1938-03-11
중간결재	지방과장, 경무국장, 경무과장		
최종결재 (수신자)		결재일자 (접수일자)	1938-05-03
		시행일자 (발송일자)	1938-05-12
첨부문서	1. 결정안 - 대전시가지계획 구역 - 대전시가지계획 가로 - 대전시가지계획 토지구획정리지구 2. 통첩안(내무국장→충청남도지사) 3. 통첩안(내무국장→深澤부대참모장) 4. 통첩안(내무국장→대전부윤)		
문서내용	대전시가지계획의 구역, 가로망, 토지구획정리지구 등의 공식적인 내역을 알 수 있음. 대전시가지계획 결정에 따라 총독부 내무국에서 충청남도, 제 20사단, 대전부 등에 내린 통첩의 내용을 알 수 있음.		

기록건명	시가지계획 결정에 관한 건		
문서번호	土 제23호		
기안부서 (발신자)	내무국 토목과	기안일자	1937-12-03
중간결재	지방과장, 경무국장, 경무과장		
최종결재 (수신자)	총독, 정무총감	결재일자 (접수일자)	
		시행일자 (발송일자)	
첨부문서	1. 시가지계획 결정에 관한 건 (시가지계획위원회 위원장) 2. 시가지계획 결정에 관한 건 (鐵工 제77호의 2, 철도국장→시가지계획위원회위원장, 1938-02-22) 3. 시가지계획 결정에 관한 건 (경무국장→시가지계획위원회위원장, 1938-02-20) 4. 시가지계획 결정에 관한 건 (농림국장→시가지계획위원회위원장, 1938-02-17) 5. 시가지계획 결정에 관한 건 (체신국장→시가지계획위원회위원장, 1938-02-25) 6. 시가지계획 결정에 관한 건 (조선군참모장→시가지계획위원회위원장, 1938-02-21) 7. 시가지계획 결정에 관한 건 회답 (진해요항부참모장→시가지계획위원회위원장, 1938-03-04) 8. 시가지계획 결정 자문에 관한 회답 (조선상공회의소회두→시가지계획위원회위원장, 1938-02-03) 9. 시가지계획 결정에 관한 건 (深澤부대참모장→시가지계획위원회위원장, 1938-02-19) 10. 시가지계획 결정에 관한 건 (충청남도지사→시가지계획위원회위원장, 1938-02-19)		
문서내용	개성, 대전, 전주, 군산, 진남포, 춘천, 원산 등 7개 지역의 시가지계획 결정과 그에 대한 시가지계획위원회 위원들의 견해를 알 수 있음.		

기록건명	대전시가지계획 구역, 동 가로 등 결정에 관한 건		
문서번호	충남 토 제2507호		
기안부서 (발신자)	충청남도지사	기안일자	1937-11-02
중간결재	토목과장		
최종결재 (수신자)	내무국장	결재일자 (접수일자)	1937-11-10
		시행일자 (발송일자)	
첨부문서	1. 답신서(대덕군 외남면장→총독, 1937-10-21) - 외남면협의회 회의록 2. 대전시가지계획 구역, 동 가로, 동 토지구획정리지구 결정에 관한 건(대덕군 회덕면장→총독, 1937-10-27) - 답신서 - 회덕면협의회 회의록 3. 대전시가지계획 구역, 동 가로 등 결정에 관한 건(대덕군 유천면장→총독, 1937-10-27) - 답신서 - 유천면협의회 회의록 4. 전보문		
문서내용	대전시가지계획안에 대한 대전 인근 대덕군 외남면, 회덕면, 유천면협의회 의 견해를 알 수 있음.		

‘대전시가지계획 구역, 동 가로 및 동 토지구획정리지구 결정에 관한 건’은 사업 결정안이 포함되어 시가지계획의 3종 세트인 구역·가로·토지구획정리의 결정 내용을 알 수 있다. 또한 결정안을 해당 지역 관련 단체장(충청남도지사, 대전부윤, 조선군 참모장)에게 통첩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시가지계획 결정에 관한 건’은 대전뿐만 아니라 계획적용일(1938년 5월 9일)이 같은 다른 지역(개성, 대전, 전주, 군산, 진남포, 춘천, 원산의 7개 지역)에 대한 정보도 알 수 있다. 이 지역들은 시가지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검토하지 않고, 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결정안을 보내어 검토·회답하게 했음도 알 수 있다. ‘대전시가지계획 구역, 동 가로 등 결정에 관한 건’은 총독부의 계획 결정안에 대한 대전시가지계획 구역에 편입된 인근 지역 면협의회(대덕군 외남면, 회덕면, 유천면협의

회)의 회의록과 답신서가 첨부되어 있다. 답신서는 총독부의 일방적 정책결정에 대해 해당지역 주민의 이해관계와 의견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식민통치의 거버넌스를 재현할 수 있는 중요기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서 구성으로 볼 때 「대전도시계획결정」 문서철은 대전 시가지계획사업에 대한 총독부의 정책 결정과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검토·자문과정,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까지 이 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문서라 할 수 있다.

「대전도시계획결정」 뿐만 아니라 현존하는 다른 지역 도시계획결정 문서 역시 이러한 패턴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시가지계획 문서 중에서 정책의 성격이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문서 생산주체의 조직적 위계나 기능적 위계에서도 중요한 위치에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문서라 할 수 있다. 또한 다음에 살펴볼 시가지계획위원회 문서에서 검토되지 않은 지역(6개 지역)의 사업 전모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문서이다.

② 시가지계획위원회 문서

다음은 시가지계획위원회 관련 문서로, 1회~5회 시가지계획위원회 관련 문서철 8개가 보존되어 있다.<표5> 조선시가지계획위원회는 시가지계획령에 기구 설치가 명시되지 않았고, 총독부 내훈에 의거하여 1936년에 조직되었다.²⁸⁾ 그러다가 1939년 제4회 위원회에서 「조선총독부시가지계획위원회 규정」(총7조)이 발표되었다.²⁹⁾ 이에 따르면 위원회는 자문, 조사 심의 권한을 갖는 기구였다. 이것은 총독부 산하 다른 각종위원회의 역할과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이 규정은 법적인 효력을

28) 이승준, 「조선총독부 도시계획 관련 정책심의기구 연구 - 조선총독부 토목회의와 시가지계획위원회」 『한국사연구』 134, 2006.9 참고

29) 국가기록원 소장 공문서 「제4회시가지계획위원회 서류(2책의1)(경성,청주) (1939)」(CJA0015671)

갖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1941년 다시 칙령으로 「시가지계획위원회관제」를 공포했다.³⁰⁾ 법령으로 위원회가 공인되었지만, 실제 그들의 역할은 더욱 축소되고 형해화되는 형태로 법령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시가지계획위원회는 사업에 관련된 총독부 내의 최고의 정책브레인들이 모여 사업의 계획을 검토하고 결정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는 기관이었다. 따라서 시가지계획위원회의 회의관련 서류와 회의록은 시가지계획사업의 전모를 파악하는데 필수적인 자료라 할 수 있다. 시가지계획위원회는 총 6회가 개최되었는데 회의 문서가 남아있는 것은 5회까지이다. 또한 시가지계획위원회가 정기적으로 열리지 않아 41개 시가지계획 적용도시의 모든 사업 내용을 검토하지 못했다. 시가지계획위원회에서 검토된 도시는 21개 도시였다. 이에 관련 공문서가 남아있는 지역(23개)과 시가지계획위원회에서 검토한 지역(21개)이 겹치는 곳은 11개 지역(경성,청진,부산,목포,대구,평양,신의주,함흥,인천,부여,다사도)이다.

〈표5〉 시가지계획위원회 관련 문서 실태

	기록철명	생산 년도	위원 씨명	의안	회의 록	정책결정 (이유)서	답신 서	검토지역	개최년 월일
1회	경성신시가지계획 및 토지구획정리 결정관계철	1936- 1938	◎	◎	◎	◎	◎	경성, 청진, 성진	1936 -01-06
2회	제2회 시가지계획위원 회 관계서철(1936)	1936	◎	◎	◎	◎		경성	1936 -11-05
3회	제3회 시가지계획위원 회 관계서철(1937)	1937	◎	◎	◎	◎	◎	부산,목포,대 구,평양,신의 주,함흥,인천	1937-01- 19~20
4회	제4회 시가지계획위원 회 서류 (경성,부여,청 주) CJA0015671	1939	◎	◎		◎	◎	경성, 부여, 청주	1939 -07-03

30) 관보 제4199호, 1941년 1월 23일자, 「조선총독부시가지계획위원회 관제」(칙령 제49호, 1941.1.14)

	제4회 시가지계획위원회 회 관계철 (소화14년7월3일)(각 도)(1939) CJA0015672	1939	◎	◎		◎		경성,청주,부 여,광주,해주, 홍남,신의주, 양시,다사도	
	제4회 시가지계획위원 회 관계철(소화14년7월 3일)(각도)(1939) CJA0015674	1939	◎	◎	◎	◎	◎	경성,청주,부 여,광주,해주, 홍남,신의주, 양시,다사도	
	제4회 시가지계획위원 회서류 (각도) CJA0015673	1939		◎		◎		부여,광주,해주 ,홍남,신의주, 양시,다사도	
5회	제5회 시가지계획위원 회 관계철 (경인, 인천)(1939)	1939	◎	◎	◎	◎		경인, 인천	1939 -10-21
6회									1943 -06-12

시가지계획위원회 회의 관련문서는 시가지계획위원회라는 조직 자체의 성격과 운영 방식, 즉 위원회 개최일자, 위원 명단 및 참가인원, 의안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의사 속기록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언설과 입장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어 정책의 맥락정보를 얻는데 유용하다. 또한 사업의 내용과 프로세스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정책 결정문서나 의견서·답신서 등이 편철되어 있다.

「제3회 시가지계획위원회 관계서철」을 통해 위원회 문서의 내용과 가치를 살펴보자. 이 문서철에는 8개의 건이 편철되어 있다. 그 중 ‘제3회 위원회 회의록’ 문서에는 위원(참석자), 회의 일정, 자리배치도, 제출 의안, 의사 속기록이 있어 회의 자체의 진행과정을 상세히 알 수 있다. 또한 회의에서 검토한 의안(해당지역 시가지계획 결정이유서), 해당 관련 지역 지방자치단체(부회, 면협의회)의 답신서·회의록이 첨부되어 위원회에서 검토한 지역의 시가지계획 수립 과정과 그에 대한 이해당사자(조선인)의 이해관계와 인식을 파악하는 데도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제3회 시가지계획위원회 관계서철」문서철 분석 - 건명 목록, 건별
내용 분석서〉

기록철명	원철명	소화12년 1월 19, 20일 제3회 시가지계획위원회 관계서철		
	정리철명	제3회 시가지계획위원회 관계서철(1937)		
생산년도	1936-1937년			
생산기관	내무국 토목과 행정계			
보존기간	갑종(영구)			
소장기호	CJA0014430			
Item				
일련 번호	건명	결재(발송) 일	기안(발신) 부서	첨부 문서
1	제3회 시가지계획위원회 회의록	1937-01-19		42건
2	시가지계획도에 관한 건	1937-03-04	체신국장	3건
3	제3회 시가지계획위원회 회의록 정서에 관 한 건			1건
4	제3회 시가지계획위원회 개최에 관한 건	1937-01-13	내무국 토목과	2건
5	제3회 시가지계획위원회 자문안 송부의 건	1937-01-08	내무국 토목과	
6	제3회 시가지계획위원회에 있어서 의안 조 제에 관한 건		내무국 토목과	2건
7	收受전보	1937-01-18	평안남도지사	
8	제3회 시가지계획위원회 임시위원 出付의 건	1937-01-18	내무국장	1건
기록건명	제3회 시가지계획위원회 회의록			
문서번호				
기안부서 (발신자)		기안일자		
중간결재				
최종결재 (수신자)		결재일자 (접수일자)		
		시행일자 (발송일자)	1937-01-19	
첨부문서	1. 회의 참석자 명단 2. 제출의안 3. 의사 속기록 4. 제3회 시가지계획위원회 일정 - 위원 간사 씌명 - 자리배치도 5. 의안 제1호 부산시가지계획 구역을 좌와 같이 결정함(부산시가지계획구 역결정이유서) 6. 의안 제2호 부산시가지계획 가로를 별지와 같이 결정함(부산시가지계획			

<p>가로결정이유서)</p> <p>7. 의안 제3호 부산시가지계획 토지구획정리를 좌와 같이 결정함(시가지계획토지구획정리결정이유서)</p> <p>8. 의안 제4호 목포시가지계획 구역을 좌와 같이 결정함(목포시가지계획구역결정이유서)</p> <p>9. 의안 제5호 목포시가지계획 가로를 별지와 같이 결정함(목포시가지계획가로, 목포시가지계획가로결정이유서)</p> <p>10. 의안 제6호 목포시가지계획 토지구획정리를 좌와 같이 결정함(시가지계획토지구획정리결정이유서)</p> <p>11. 의안 제7호 대구시가지계획구역을 좌와 같이 결정함(대구시가지계획구역결정이유서)</p> <p>12. 의안 제8호 대구시가지계획 가로를 별지와 같이 결정함(대구시가지계획가로, 대구시가지계획가로결정이유서)</p> <p>13. 의안 제9호 대구시가지계획 토지구획정리를 좌와 같이 결정함(시가지계획토지구획정리결정이유서)</p> <p>14. 의안 제10호 평양시가지계획구역을 좌와 같이 결정함(평양시가지계획구역결정이유서)</p> <p>15. 의안 제11호 평양시가지계획 가로를 별지와 같이 결정함(평양시가지계획가로, 평양시가지계획가로결정이유서)</p> <p>16. 의안 제12호 평양시가지계획 토지구획정리를 좌와 같이 결정함(시가지계획토지구획정리결정이유서)</p> <p>17. 의안 제13호 신의주시가지계획구역을 좌와 같이 결정함(신의주시가지계획구역결정이유서)</p> <p>18. 의안 제14호 신의주시가지계획 가로를 별지와 같이 결정함(신의주시가지계획가로, 신의주시가지계획가로결정이유서)</p> <p>19. 의안 제15호 신의주시가지계획 토지구획정리를 좌와 같이 결정함(시가지계획토지구획정리결정이유서)</p> <p>20. 의안 제16호 함흥시가지계획구역을 좌와 같이 결정함(함흥시가지계획구역결정이유서)</p> <p>21. 의안 제17호 함흥시가지계획 가로를 별지와 같이 결정함(함흥시가지계획가로, 함흥시가지계획가로결정이유서)</p> <p>22. 의안 제18호 함흥시가지계획 토지구획정리를 좌와 같이 결정함(시가지계획토지구획정리결정이유서)</p> <p>23. 의안 제19호 인천시가지계획구역을 좌와 같이 결정함(인천시가지계획구역결정이유서)</p> <p>24. 의안 제20호 인천시가지계획 가로를 별지와 같이 결정함(인천시가지계획가로, 인천시가지계획가로결정이유서)</p> <p>25. 의안 제21호 인천시가지계획 토지구획정리를 좌와 같이 결정함(시가지계획토지구획정리결정이유서)</p> <p>26. 부산부회의 답신서(부산시가지계획 구역, 동 가로망 및 토지구획정리</p>

	<p>시행지구 결정에 관한 건, 土 제1,804호, 경상남도지사 → 총독, 1936-11-23)</p> <p>27. 부산시가지계획에 관한 건(釜土 제587호, 부산부윤 → 내무국장, 1936-11-26)</p> <p>28. 목포부회 및 면협의회의 답신서(목포시가지계획 구역, 동 가로망 등의 결정에 관한 건, 전라남도지사→내무국장, 1936-12-03)</p> <p>- 답신서(목포부회의장→총독, 1936-11-17)</p> <p>- 무안군 이로면협의회의 의장→총독, 1936-11-18)</p> <p>29. 대구부회 및 면협의회의 답신서(대구시가지계획 구역, 동 가로망 등의 결정에 관한 건, 경상북도지사→내무국장, 1936-11-18)</p> <p>- 대구시가지계획 구역 등 결정의 자문에 대한 답신서(대구부회의장→총독, 1936-11-14)</p> <p>- 답신서(달성군 성북면협의회의의장→총독, 1936-11-16)</p> <p>- 답신서(달성군 수성면협의회의의장→총독, 1936-11-13)</p> <p>- 대구시가지계획 구역, 동 가로망 및 동토지구획정리 시행지구 결정의 건(達西面 제706호, 달성군 달서면장→총독, 1936-11-16)</p> <p>30. 평양부회 및 면협의회의 답신서(평양시가지계획 구역, 동 가로망 등 결정에 관한 건 회답, 평안남도지사→총독, 1936-11-16)</p> <p>- 평양시가지계획 구역, 동 가로망 및 토지구획정리 시행지구에 관한 답신서(議 제33호, 평양부회의장→총독, 1936-11-12)</p> <p>- 답신서(대동군 대동강면협의회의의장→총독, 1936-11-06)</p> <p>- 답신서(대동군 임원면협의회의의장→총독, 1936-11-04)</p> <p>- 답신서(대동군 고평면협의회의의장→총독, 1936-11-05)</p> <p>- 답신서(대동군 서천면협의회의의장→총독, 1936-11-06)</p> <p>- 답신서(대동군 용산면협의회의의장→총독, 1936-11-07)</p> <p>31. 신의주부회의 답신서(신의주시가지계획 구역, 동 가로망 및 토지구획정리 시행지구 결정에 관한 건, 平北土 제1,061호, 평안북도지사→총독, 1936-11-11)</p> <p>- 답신서(신의주부회의의장→총독, 1936-11-09)</p> <p>32. 함흥부회 및 면협의회의 답신서(함흥시가지계획 구역, 동 가로망 등의 결정에 관한 건, 咸南土 제843호, 함경남도지사→내무국장, 1936-11-20)</p> <p>- 답신서(함흥부회의의장→총독, 1936-11-17)</p> <p>- 답신서(의장 면장 李國鉉 외 11명→총독, 1936-11-18)</p> <p>- 답신서(함경남도 함주군 운남면협의회의 의장 외 2명→ , 1936-11-16)</p> <p>- 함흥시가지계획 구역, 동 가로망 및 동토지구획정리 시행지구 결정에 관한 건(鐵工 제1,243호, 철도국장→내무국장, 1936-10-30)</p> <p>33. 인천부회의 답신서(인천시가지계획 구역, 동 가로망 및 동토지구획정리 시행지구 결정에 관한 건, 土 제2,640호, 경기도지사→총독, 1936-11-10)</p> <p>- 답신서(인천부회의의장→총독, 1936-11-02)</p> <p>34. 구획정리구역에 관한 건(인천부윤→내무국장, 1936-11-30)</p>
--	---

	<p>35. 부산시가지계획 구역, 동 가로망 및 동 토지구획정리 시행지구의 결정에 관한 건(土 제505호, 1936-11-02)</p> <p>36. 목포시가지계획 구역, 동 가로망 및 동 토지구획정리 시행지구의 결정에 관한 건(土 제506호, 1936-11-02)</p> <p>37. 대구시가지계획 구역, 동 가로망 및 동 토지구획정리 시행지구의 결정에 관한 건(土 제507호, 1936-11-02)</p> <p>38. 평양시가지계획 구역, 동 가로망 및 동 토지구획정리 시행지구의 결정에 관한 건(土 제503호, 1936-10-27)</p> <p>39. 신의주시가지계획 구역, 동 가로망 및 동 토지구획정리 시행지구의 결정에 관한 건(土 제504호, 1936-10-27)</p> <p>40. 함흥시가지계획 구역, 동 가로망 및 동 토지구획정리 시행지구의 결정에 관한 건(土 제530호, 1936-11-09)</p> <p>41. 인천시가지계획 구역, 동 가로망 및 동 토지구획정리 시행지구의 결정에 관한 건(土 제502호, 1936-10-27)</p> <p>42. 11월 26일 照會에 대한 회답(朝鮮平安철도주식회 취체역 사장→내무국장, 1936-12-01)</p> <p>- 진남포시가지계획에 관한 건(내무국장→평안철도주식회사, 1936-11-26)</p>
문서내용	<p>제3회 시가지계획위원회에서 논의된 부산, 목포, 대구, 평양, 신의주, 함흥, 인천 등 각 도시 시가지계획 구역, 가로망,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내용 및 그 결정 절차를 알 수 있음.</p> <p>19번 첨부문서의 인천시가지계획 구역결정이유서는 25번 첨부문서의 중간에 잘못 첩입되어 있음.</p>

이러한 시가지계획위원회 문서는 앞에서 살펴본 도시계획결정 문서와 함께 조선시가지계획사업의 주요 내용과 정책 입안·시행과정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이다. 다행히 총 6회 중 5회까지의 문서가 남아있어 시가지계획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문서들을 통해 시가지계획위원회에서 검토된 지역의 사업은 상당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나 해당 지역의 이해관계나 시가지계획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입장이 전달·검토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문서가 당대의 事實을 여과없이 전달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당대의 사회적 컨텍스트를 확보할 수 있는 자료들과 함께 검토한다면 보다 정확한 역사적 史實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시가지계획 문서 중 도시계획결정 문서와 시가지

계획위원회 문서는 가치가 높은 기록으로서 시가지계획을 도큐멘테이션 하는데 매우 중요한 문서이다. 이를 통해 시가지계획 실시 지역 41개 중 27개 지역에 대한 시가지계획의 전모를 살펴볼 수 있다. 이 외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문서나 기타 사업 관련 문서, 가치가 낮은 기능의 문서들도 각각의 기능과 위계에 맞게 배치하여 검토하면 공문서의 기록의 재현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4. 맺음말

현존 총독부 공문서는 이미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영구보존문서로 보존되고 있다. 당대 어떤 맥락 하에 영구보존 결정되었는가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제시되고 있지 않지만 일단 당대의 ‘행정적’ 가치와 “역사적 徵考가 될 만한” 역사적 가치가 인정된 문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존 문서의 실태는 부분적이고 불균등한 형태이기에 기록(archives)으로서의 가치평가와 활용에 어려운 점이 많다.

앞에서 살펴본 시가지계획 관련 공문서 역시 이를 통해 일제시기 진행된 시가지계획의 모든 상을 도큐멘테이션하는 데는 상당한 한계를 갖는다. 이에 이러한 불균형 잔존 행정기록에 대해서는 당대의 정책·제도 변화에 대한 컨텍스트를 파악하고, 이를 수행한 조직의 핵심기능을 종합하여 거시 평가의 틀을 만들고, 여기에 현존 문서를 배치하는 도큐멘테이션 과정, 이 과정에서 가치가 높은 기능과 관련된 기록이 소수라는 점, 즉 기록의 재현성이 불완전한 것을 보충하기 위한 다른 역사적 자료의 적극적 이용과 적극적인 기록수집 방안을 함께 강구할 필요가 있다.³¹⁾

31) 김익한, 「불균형 잔존 행정기록의 평가방법 시론 - 조선총독부 공문서의 평가 절차론 수립을 위하여」 『기록학연구』 13, 2006. 196쪽.

본고는 일제시기 도시계획 관련 공문서 중에서도 시가지계획 관련 문서라는 하나의 문서군(series) 정도의 문서에 대해 기록 평가를 시도했다. 따라서 이를 통해 총독부 공문서 전반에 대한 평가 방법을 도출하기는 한계가 있으나, 시가지계획이라는 총독부 식민정책의 집행과정에서 생산된 문서의 맥락을 이해하여 기록의 가치를 평가함으로써 문서 활용에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좀 더 체계적인 샘플링 작업을 거쳐 ‘조선총독부 공문서 종합목록’에서 분류한 문서군³²⁾을 단위로 총독부 공문서 전반에 대해 거시적 기능평가와 개별 기록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병행하여 기록가치의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향후 기록 활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한편 총독부 공문서와 같이 이미 당대사가 아닌 과거사로서 정리되는 시기의 기록 중 영구보존기록으로 결정되어 보존되고 있는 역사기록에 대한 평가는 처분을 위한 평가로서의 기능은 갖지 못한다. 이에 역사기록에 대한 평가는 향후 기록의 접근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DB화나 정보콘텐츠화와 연계하는 방안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National Archive에 소장된 기록은 역사기록으로서 국가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때, 그 기록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활용을 위한 작업은 단순히 역사연구의 심화에 기여한다는 면을 넘어 현재의 통치전략과 미래를 위한 비전 형성에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2)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엮음, 『조선총독부 공문서 종합목록집』, 한울아카데미, 2005.

Abstracts

Archival Appraisal and Classification of the Official Documents of the Government-General of Choson Related to Urban District Planning

Lee, Song-Soon

The historical value of the official documents of the Government General of Choson preserved as permanent archived documents has long been recognized. However, the fact that only parts of the overall documents were preserved and that the contents of the existing documents is not uniform, results in many problems regarding the evaluation and usage of such documents as archives.

This study attempts to appraise a series of archival documents related to urban district planning compiled during the colonial era. Although limited in terms of its applicability to the development of an evaluation method for the official documents of the Government General of Choson as a whole, by evaluating the value of these documents based on the background of the documents produced during the Government General of Choson's implementation of its colonial policy, this study provides an important indicator of how such documents should be used in the future.

On the other hand, the assessment of historical records such as the official documents of the Government General of Choson which have already been designated and preserved as permanent archived documents should not be

perceived as an attempt to dispose of the relevant documents. With regard to the appraisal of historical archive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measures to link such documents with existing databases or information contents in order to heighten access to and usage of the relevant documents in the future.

Key words : Archival appraisal, classification, city (urban) planning, official documents of the Government General of Choson, Choson Urban District Planning Act, Urban District Planning Committee



к с і